

출항정지명령서

제	호		
어선의 명칭		선 장 명	
어선번호		국 적	
총 톤 수	톤	어업의 종류	
입항일자	년 월 일	출항예정일자	년 월 일
출항정지사유			
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			
비 고	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.
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